

정정 신고 (보고)

2020년 9월 2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
- 프랭클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04.17.

3. 정정사항 :

-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설정/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

-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

| 항목 | 정정 전 | 정정 후 |
|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|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,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,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| 제25조(판매가격) |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|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|

| | | |
|------------|---|--|
| |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.</p> |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.</p> |
| 제27조(환매가격) |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 (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|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 (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|
| <부칙> | - | 제1조(변경계약의 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 |